

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5.07.18]
(제정) 2025.07.18 조례 제227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교통정책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546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,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음주운전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음주운전 사고”란 음주운전 중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.
3. “자동차등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.
4. “자전거등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시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음주운전 예방·근절 활동계획)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·근절을 위한 활동계획(이하 “활동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 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 2. 교통수단별, 지역별 특성에 맞춘 예방·근절 활동에 관한 사항
 3.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5조(음주운전 예방·근절 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·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
 2.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
 3. 민간단체, 경찰서 등과의 연계 협력
 4.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

나.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

5.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6조(재정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파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(2025. 7. 18. 조례 제227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